

투자 위험 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흥국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흥국플래티넘개인용MMF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국플래티넘개인용MMF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흥국플래티넘개인용MMF1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흥국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1년 01월 0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년 01월 2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흥국자산운용(주) 본점(☎ 02-2122-2800, www.hkfund.co.kr)
각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흥국플래티넘개인용MMF1호	AX8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AX9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1)	AX9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AX9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AX9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펀드 등(C-w)	B96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CZ466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상세 목차

제 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사항

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1.01.01)

흥국플래티넘개인용MMF1호 (펀드코드: AX899)

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흥국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국공채, CD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금리 및 시장 상황의 변동성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신용등급 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흥국플래티넘개인용MMF1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은행채, 공사 CP, 기타 유동자산 등에 투자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개인용 MMF 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해당없음	0.28	0.2	0.21	29	60	92	161	36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5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4)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오프라인 클래스에 비해 일반적으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0.01.02 ~ 21.01.01	최근 2년 19.01.02 ~ 21.01.01	최근 3년 18.01.02 ~ 21.01.01	최근 5년 16.01.02 ~ 21.01.01	설정일 이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2014.12.10	0.74	1.14	1.28	1.30	1.37		
	비교지수	-	0.70	1.15	1.28	1.29	1.36		
	수익률 변동성	2014.12.10	0.04	0.06	0.06	0.05	0.05		
	주1) 비교지수: 비교지수 : (1 * [CALL금리])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단기금융, 단위:%)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운용전문인력	박성인	1981	책임(팀장)	52개	97,383억원	0.00	0.00	0.92	1.30	11년3개월
	서덕유	1975	부책임(팀장)			0.00	0.00			8년5개월
운용전문인력	<p>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와 위험의 주요내용								
	투 자 원 본 손 실 위 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자 율 변 동 위 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 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신 용 등 급 하 락 에 따 른 위 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 부 가 와 시 가 와 의 과 리 조 정 에 따 른 기 준 가 격 변 동 위 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습니다.								
집 합 투 자 기 구 해 지 의 위 험	수익자 전원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2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기준가	<table border="1"> <tr> <td>산정방법</td> <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 </tr> <tr> <td>공시장소</td> <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 </tr> </table>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과세의 주요내용</td> </tr> <tr> <td>집합투자기구</td> <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 </tr> <tr> <td>수익자</td> <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 </tr>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흥국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2122-28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kfund.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1년 01월 20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8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에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 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P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C-1)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금입니다.
	랩, 펀드 등(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펀드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금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금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hk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kfund.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kfund.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흥국플래티넘개인용MMF1호	AX8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AX9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1)	AX9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AX9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AX9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펀드 등(C-w)	B96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CZ46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개인용)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흥국플래티넘개인용MMF1호	AX8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AX9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1)	AX9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AX9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AX9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펀드 등(C-w)	B96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CZ46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 사항
2014.12.20	최초설정
2015.07.03	- 부책임용전문인력 말소 - 자본시장법 개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
2015.10.20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의 적용예외 조항 신설
2015.12.10	퇴직연금 클래스(C-p2) 신설
2016.02.22	정기결산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른 정정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7.01.17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2017.04.20	책임/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에 따른 정정
2018.01.25	-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등 -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8.12.21	-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 투자대상자산 명확화(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09.16	- 한글클래스명칭 병기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2019.12.13	- 클래스 신설(S-pr) - 법 개정사항 반영
2020.01.17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2020.05.13	- 책임용전문인력 변경(허정기→박성인) -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박성인→조용익)
2021.01.20	-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조용익→서덕유) -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흥국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19층 (Tel 2122-2800, www.hkfund.co.kr)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1.01.01 현재)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단위 : 개, 억원)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단기금융, 단위:%)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성인	1981	책임 (팀장)	52개	97,383억원	0.00	0.00	0.92	1.30	* 운용경력 : 11년 3개월 - '07.10~'13.10 : 대신증권 신탁부 - '13.11~'16.07 : 신영증권 Asset Allocation부 - '16.07~현재 : 흥국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서덕유	1975	부책임 (팀장)			0.00	0.00			* 운용경력 : 8년 5개월 - '08.07~'09.02 : 흥국증권 채권영업팀 - '09.02~'12.07 : 한양증권 채권금융팀 - '12.07~'14.12 : 메리츠종금증권 채권금융 2 부 - '15.01~'15.10 : 부국증권 FICC GM 2 부 - '15.10~'16.06 : 하이투자증권 채권영업부 - '16.07~현재 : 흥국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2,407억
-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②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2014.12.10. 채권운용본부 안희정(1983)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15.07.03. 말소
- 2017.04.20. 채권운용본부 성일환(1969) 책임운용전문인력 말소
- 2017.04.20 채권운용본부 허정기(1973)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20.05.13. 말소
- 2017.04.20 채권운용본부 박성인(1981)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20.05.13. 말소
- 2020.05.13. 채권운용본부 박성인(1981)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20.05.13. 채권운용본부 조용익(1975)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21.01.20. 말소
- 2021.01.20. 채권운용본부 서덕유(1975)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집합투자신탁(개인용),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P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C-1)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펀드 등(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펀드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은행채, 공사 CP, 기타 유동자산 등에 투자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개인용 MMF** 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에 운용합니다. 다만, 채무증권(법 제4조 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제외)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대상 조건
양도성 예금증서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채 무 증 권 (채 권 등)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어 음 등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단 기 대 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금 융 기 관 예 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집 합 투 자 증 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 기 사 채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환 매 조 건 부 매 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신탁업자 고유 재산 과 의 거 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 나.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 다. 영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 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3)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2항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
3. 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신 용 등 급

①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③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2항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위의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인 발행한 채무증권	이 투자신탁재산을 채무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채무증권 :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한다) 나. 어음 : 자산총액의 100분의 3 (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u>단기사채</u>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0분의 5).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일인과의 거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 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1) 만기 30 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 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국채증권투자	이 투자신탁재산의 5%를 초과하여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제한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75 일을 초과하는 행위 -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규약 제 19 조제 9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주 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우량 등급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합니다.
- (2) 채권에의 투자는 국공채 중심으로 투자하고, 유동자산에의 투자는 양도성 정기예금증서 및 정기예금, CP(A1이상), CALL LOAN(국내 제1,2금융권 및 외국계은행)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 (3) 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조정을 통하여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합니다.
- (4)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 CALL*100%

※ 지수 선정사유 :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동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공채, CD 및 기업어음등에 투자하는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

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 자 원 본 손 실 위 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자 율 변 동 위 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 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신 용 등 급 하 락 에 따 른 위 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 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 래 상 대 위 험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해당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 동 위 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장 부 가 와 시 가 와 의 조 정 에 따 른 기 준 가 격 변 동 위 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 분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	-----------

환매연기 위험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편입 펀드에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집합 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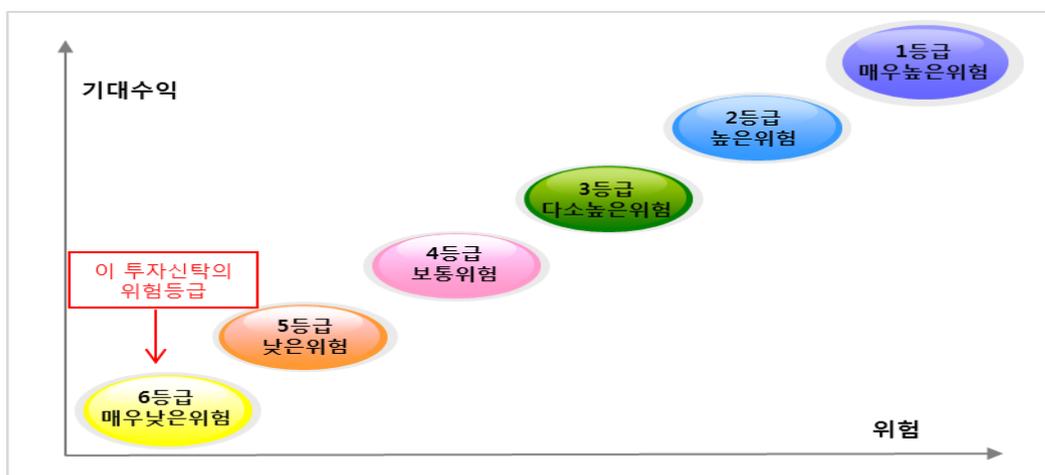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 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 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에 따라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써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0.06%**이므로 **6 등급 중 6 등급(매우 낮은 위험)**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에 비해 기대수익이 적고 투자위험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수익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16.7.2	5등급	6등급	▶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 ▶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음

니다.

홍국자산운용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분류기준(운용기간 3년 미만인 경우)

위험등급	분류기준	내 용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홍국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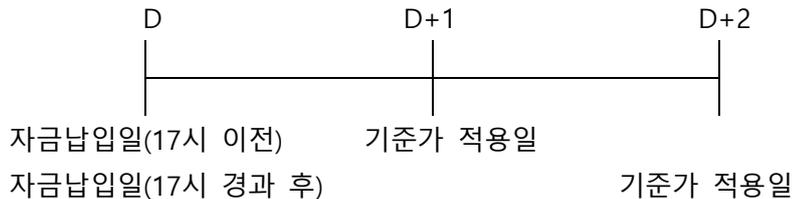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ss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C-1)	3억원이상 가입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펀드 등(C-w)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집합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r)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집합투자기구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일 경우 판매시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 수익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내지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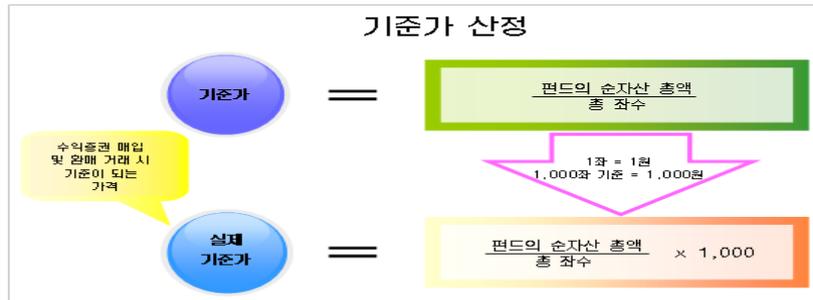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주요 내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

	다.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해 매일 공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 및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1,000 분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유효이자율법이란 :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 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

구분	주요내용
구성	1. 위원장 : 대표이사 2. 위원 : 운용업무 담당 임원 및 해당 운용본부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평가업무 담당 임원 및 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한 자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 류	가 입 자 격	수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제한없음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1)	3억원이상 가입자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p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펀드 등(C-w)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집합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r)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u>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연, %)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집합	판매	신탁	일반	총보수	동종	기타	총보수	합성 총보수	증권

	투자 업자 보수	회사 보수	업자 보수	사무 관리 보수		유형 총보수	비용	· 비용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거래 비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0620	0.2000	0.0100	0.0080	0.2800	0.2100	0.0055	0.2855	0.2855	0.010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1)	0.0620	0.0700	0.0100	0.0080	0.1500	-	0.0054	0.1554	0.1554	0.0111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	0.0620	0.1500	0.0100	0.0080	0.2300	-	0.0055	0.2355	0.2355	0.010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p2)	0.0620	0.1400	0.0100	0.0080	0.2200	-	0.0054	0.2254	0.2254	0.010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펀드 등 (C-w)	0.0620	0.0000	0.0100	0.0080	0.0800	-	0.0034	0.0834	0.0834	0.010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S-pr)	0.0620	0.0400	0.0100	0.0080	0.1200	-	0.0000	0.1200	0.1200	0.0000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4)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클래스펀드)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클래스펀드)이 통합펀드(실제 운용 되는 펀드)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통합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29	60	92	161	363

-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9	60	92	161	36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	33	50	88	199
-고액(C-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	33	50	88	199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4	49	76	133	300
-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4	49	76	133	3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3	47	73	127	288
-퇴직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3	47	73	127	28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	18	27	47	107
-랩,펀드 등(C-w)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	18	27	47	107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	26	39	67	149
-퇴직연금(S-pr)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3	26	39	67	149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5)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 \text{환급비율}^{1)}$$

주1) 환급비율:(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종류C-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p>준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수령요건	<p>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p>
세액공제	<p>[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p> <p>[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연금수령시 과세	<p>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p>
분리과세한도	<p>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p>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p>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p>
해지가산세	<p>없음</p>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p>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연금외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p>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p>
연금계좌 승계	<p>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p>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종류C-p2, 종류S-pr 수익증권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p>-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p>

	<p>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p>※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p>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기(2019.12.10 - 2020.12.09)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5기(2018.12.10 - 2019.12.09)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4기(2017.12.10 - 2018.12.09)	삼화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제표

흥국플래티넘개인용 MMF1 호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20.12.09)	(2019.12.09)	(2018.12.09)
운용자산	139,382,617,647	139,391,828,741	172,016,275,038
증권	118,836,280,491	138,139,493,771	171,231,542,80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0,546,337,156	1,252,334,970	784,732,23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87,666,191	2,953,416,504	969,578,831
자산총계	139,670,283,838	142,345,245,245	172,985,853,86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113,734	4,565,056	5,538,720
부채총계	4,113,734	4,565,056	5,538,720
원본	138,176,334,979	139,762,001,462	169,869,952,365
수익조정금	61,186,657	-56,817,011	-2,062,539,212
이익잉여금	1,428,648,468	2,635,495,738	5,172,901,996
자본총계	139,666,170,104	142,340,680,189	172,980,315,149

흥국플래티넘개인용 MMF1 호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19.12.10 - 2020.12.09)	(2018.12.10 - 2019.12.09)	(2017.12.10 - 2018.12.09)
운용수익	1,447,147,836	2,658,930,862	5,194,599,700
이자수익	1,651,111,137	2,667,995,250	5,179,832,333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수익(손)	-203,963,301	-9,064,388	14,767,367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8,499,368	23,435,124	21,697,704
당기순이익	1,428,648,468	2,635,495,738	5,172,901,996
매매회전율	0.00	0.00	0.00

※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 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

투자신탁명 : **흥국플래티넘개인용MMF1호** [단위:원]

과 목	제6기(2020.12.09)		제5기(2019.12.09)		제4기(2018.12.09)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0,546,337,156	1,252,334,970	1,252,334,970	784,732,231	784,732,231
1. 현금및현금성자산	546,337,156					
2. 예치금	20,000,000,000					
3. 증거금						
대출채권		98,817,833,980		129,133,217,351		165,812,967,347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40,800,000,000		55,100,000,000		98,200,000,000	
3. 매입어음	58,017,833,980		74,033,217,351		67,612,967,347	
4. 대출금						
유가증권		20,018,446,511		9,006,276,420		5,418,575,460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20,018,446,511		9,006,276,420		5,418,575,460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287,666,191		2,953,416,504		969,578,831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287,666,191		2,953,416,504		969,578,831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39,670,283,838		142,345,245,245		172,985,853,869
부 채						
운 용 부 채						
1. 흡선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4,113,734		4,565,056		5,538,72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113,734		4,565,056		5,538,720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4,113,734		4,565,056		5,538,720
자 본						
1. 원 본	138,176,334,979		139,762,001,462		169,869,952,365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489,835,125	2,578,678,727		3,110,362,784	
(발행회수 당기: 138,176,334,979 차)						
(발행회수 당기: 139,762,001,462 차)		1,428,648,468		2,635,495,738		5,172,901,996
(발행회수 당기: 169,869,952,365 차)		61,186,657		-56,817,011		-2,062,539,212
(기초가격 당기: 1,000.00 원)						
(기초가격 당기: 1,000.00 원)						
(기초가격 당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139,666,170,104		142,340,680,189		172,980,315,14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39,670,283,838		142,345,245,245		172,985,853,869

다. 손익계산서 :

손 익 계 산 서

투자신탁명 :

흥국플래티넘개인용MMF1호

[단위:원]

과 목	제6기(2019.12.10-2020.12.09)		제5기(2018.12.10-2019.12.09)		제4기(2017.12.10-2018.12.09)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651,111,137	2,667,995,250	2,667,995,250	5,179,832,333	5,179,832,333
1. 이 자 수 익	1,651,111,137		2,667,995,250		5,179,832,333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746,120		13,570,520		27,230,691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691,957		1,296,277		8,181,715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2,054,163		12,274,243		16,818,685	
7. 기타거래차익					2,230,291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09,709,421		22,634,908		12,463,324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208,704,596		18,611,657		4,761,718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1,004,825		4,023,251		7,701,606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18,499,368		23,435,124		21,697,704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8,499,368		23,435,124		21,697,704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428,648,468		2,635,495,738		5,172,901,996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10339314		0.018857026		0.03045213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흥국플래티넘개인용 MMF1 호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2.10 - 2020.12.09	1,398	1,398	2,536	2,552	2,552	2,567	1,382	1,397
2018.12.10 - 2019.12.09	1,699	1,699	2,088	2,108	2,389	2,410	1,398	1,423
2017.12.10 - 2018.12.09	3,450	3,450	7,198	7,244	8,949	9,016	1,699	1,730

(주 1) 2019.12.10 - 2020.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95,421,214 좌/1,095,421,214 원

(주 2) 2018.12.10 - 2019.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133,291,439 좌/2,133,291,439 원

(주 3) 2017.12.10 - 2018.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569,482,230 좌/2,569,482,230 원

흥국플래티넘개인용 MMF1 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2019.12.10 - 2020.12.09	690	690	2,010	2,020	1,953	1,962	747	753
2018.12.10 - 2019.12.09	824	824	1,722	1,736	1,857	1,871	690	700
2017.12.10 - 2018.12.09	1,296	1,296	3,638	3,660	4,110	4,136	824	837

(주 1) 2019.12.10 - 2020.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55,002,148 좌/555,002,148 원

(주 2) 2018.12.10 - 2019.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90,054,632 좌/990,054,632 원

(주 3) 2017.12.10 - 2018.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74,281,231 좌/1,174,281,231 원

흥국플래티넘개인용 MMF1 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2.10 - 2020.12.09	83	83	289	290	295	296	77	77
2018.12.10 - 2019.12.09	60	60	163	164	140	141	83	84
2017.12.10 - 2018.12.09	1,357	1,357	1,313	1,316	2,609	2,622	60	61

(주 1) 2019.12.10 - 2020.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66,969,130 좌/66,969,130 원

(주 2) 2018.12.10 - 2019.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2,619,913 좌/132,619,913 원

(주 3) 2017.12.10 - 2018.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9,455,074 좌/89,455,074 원

흥국플래티넘개인용 MMF1 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2.10 - 2020.12.09	565	565	168	169	233	234	501	505
2018.12.10 - 2019.12.09	714	714	143	144	292	294	565	574
2017.12.10 - 2018.12.09	634	634	1,890	1,903	1,811	1,826	714	725

(주 1) 2019.12.10 - 2020.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21,651,846 좌/421,651,846 원

(주 2) 2018.12.10 - 2019.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08,573,947 좌/908,573,947 원

(주 3) 2017.12.10 - 2018.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137,763,961 좌/1,137,763,961 원

흥국플래티넘개인용 MMF1 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펀드 등(C-w)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2.10 - 2020.12.09	0	0	0	0	0	0	0	0
2018.12.10 - 2019.12.09	1	1	0	0	1	1	0	0
2017.12.10 - 2018.12.09	123	123	36	36	159	160	1	1

(주 1) 2019.12.10 - 2020.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23,729 좌/423,729 원

(주 2) 2018.12.10 - 2019.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35,505 좌/735,505 원

(주 3) 2017.12.10 - 2018.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94,484 좌/1,394,484 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9.12.10 - 2020.12.09	63	63	47	47	49	49	60	61
2018.12.10 - 2019.12.09	104	104	31	31	72	73	63	64
2017.12.10 - 2018.12.09	46	46	273	274	215	217	104	105

(주 1) 2019.12.10 - 2020.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1,374,361 좌/51,374,361 원

(주 2) 2018.12.10 - 2019.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1,307,442 좌/101,307,442 원

(주 3) 2017.12.10 - 2018.12.09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66,587,480 좌/166,587,480 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01.02 ~ 21.01.01	19.01.02 ~ 21.01.01	18.01.02 ~ 21.01.01	16.01.02 ~ 21.01.01	14.12.10 ~ 21.01.01
흥국플래티넘개인용MMF1호	1.03	1.42	1.56	1.59	1.65
비교지수	0.70	1.15	1.28	1.29	1.36
수익률변동성	0.04	0.06	0.06	0.05	0.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74	1.14	1.28	1.30	1.37
비교지수	0.70	1.15	1.28	1.29	1.3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고액(C-1)	0.87	1.27	1.41	1.43	1.49
비교지수	0.70	1.15	1.28	1.29	1.3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C-p)	0.79	1.19	1.33	1.35	1.42
비교지수	0.70	1.15	1.28	1.29	1.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펀드 등(C-w)	0.95	1.34	1.48	1.51	1.57
비교지수	0.70	1.15	1.28	1.29	1.36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C-p2)	0.80	1.20	1.34		1.36
비교지수	0.70	1.15	1.28		1.29

주 1) 비교지수 : (1 * [CALL 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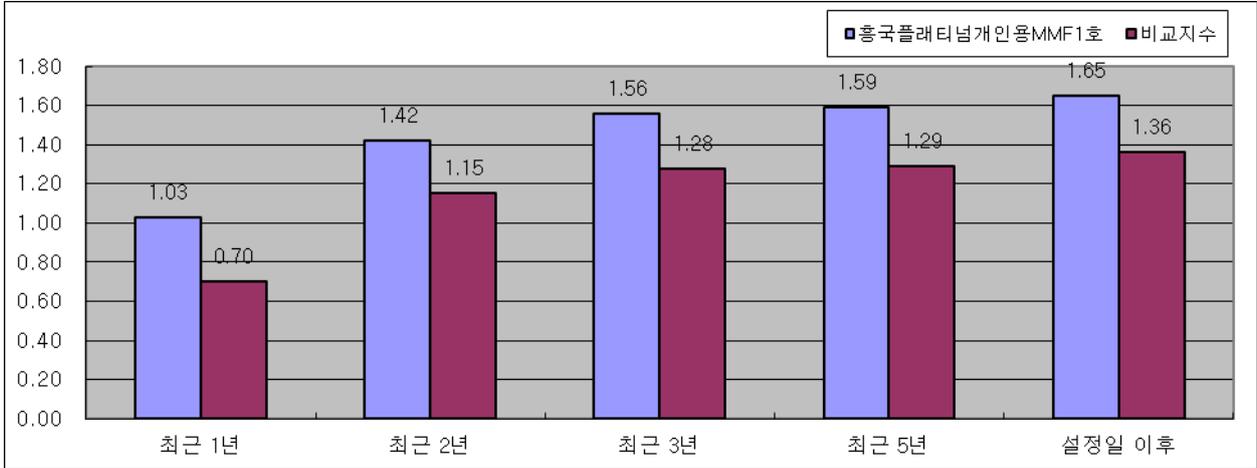
주 3) 마지막 측정대상 기간의 수익률은 해당기간의 기간수익율입니다.

주 4)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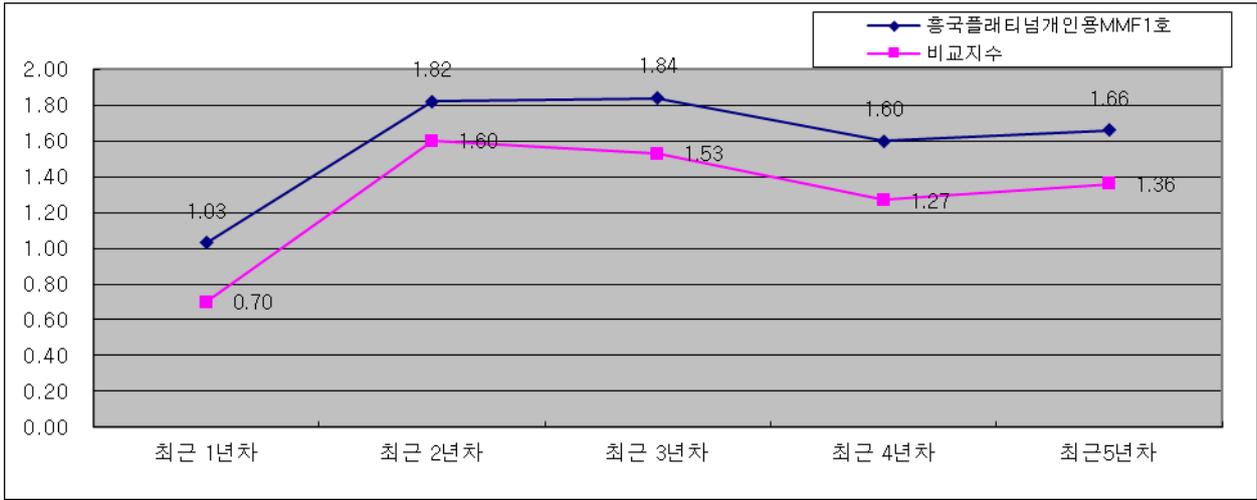
주 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01.02 ~ 21.01.01	19.01.02 ~ 20.01.01	18.01.02 ~ 19.01.01	17.01.02 ~ 18.01.01	16.01.02 ~ 17.01.01
홍국플래티넘개인용MMF1호	1.03	1.82	1.84	1.60	1.66
비교지수	0.70	1.60	1.53	1.27	1.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75	1.53	1.56	1.31	1.37
비교지수	0.70	1.60	1.53	1.27	1.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1)	0.88	1.66	1.69	1.45	1.51
비교지수	0.70	1.60	1.53	1.27	1.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80	1.58	1.61	1.36	1.42
비교지수	0.70	1.60	1.53	1.27	1.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펀드 등(C-w)	0.95	1.74	1.76	1.52	1.58
비교지수	0.70	1.60	1.53	1.27	1.3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0.81	1.59	1.62	1.37	1.43
비교지수	0.70	1.60	1.53	1.27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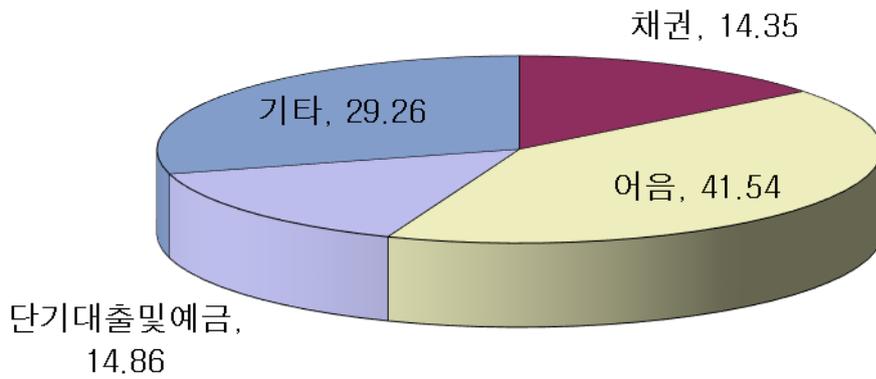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0.12.09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등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200	580	0	0	0	0	0	0	207	409	1,397
	(0.00)	(14.35)	(41.54)	(0.00)	(0.0 0)	(0.0 0)	(0.00)	(0.00)	(0.0 0)	(14.86)	(29.26)	(100.00)
합계	0	200	580	0	0	0	0	0	0	207	409	1,397
	(0.00)	(14.35)	(41.54)	(0.00)	(0.0 0)	(0.0 0)	(0.00)	(0.00)	(0.0 0)	(14.86)	(29.2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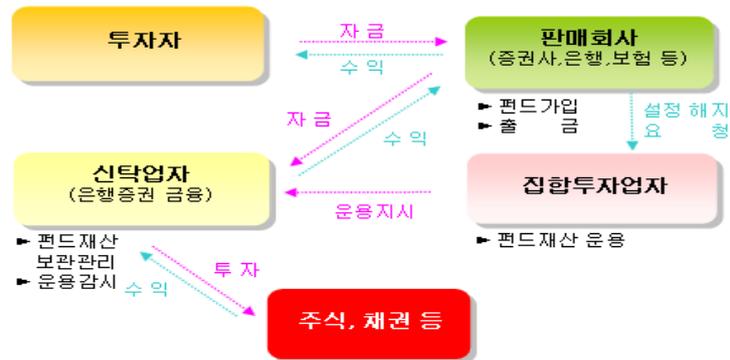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흥국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19층 (연락처 : 02-2122-2800, www.hkfund.co.kr)
회사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08.23 태광에셋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 2000.02.11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 2000.02.16 태광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 - 2000.06.19 자산운용업 허가 - 2006.03.20 흥국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 - 2009.02.04 집합투자업 인가 - 2012.06.07 흥국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
자본금	100 억
주요주주현황	흥국증권(72.0%), 이호진(20.0%), 기타(8%)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③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④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19.12.31	'18.12.31	항 목	'19.12.31	'18.12.31
유동자산	42,362	41,109	영업수익	23,886	23,673
고정자산	5,652	4,375	영업비용	13,642	13,940
<u>자산총계</u>	<u>48,014</u>	<u>45,485</u>	영업이익	10,244	9,733
유동부채	3,721	2,913	영업외수익	73	39
고정부채	628	-	영업외비용	52	7
<u>부채총계</u>	<u>4,349</u>	<u>2,913</u>	경상이익	10,265	9,765
자본금	10,000	10,000	법인세비용	2,351	2,255
이익잉여금	33,665	32,572	당기순이익	7,914	7,510
<u>자본총계</u>	<u>43,665</u>	<u>42,572</u>			

라. 운용자산 규모

(2021.01.0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증권형					단기 금융	파생형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PE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투자 계약	재간 접형							
수탁 고	4,517	4,723	55,393	0	1,328	37,795	2,234	3,790	28,258	759	222	139,018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신탁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10 (여의도동 34-9) (Tel :1544-8333)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http://www.ksfc.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의무

- 수탁회사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②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대표전화: 2180-0400)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KIS 채권평가(주)	NICE 피앤아이(주)	(주)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7 유화증권빌딩 9층 (02-3770-0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마곡동) (02)769-77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참조)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을 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함)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 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 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 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 3)및4)의 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법 제247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1회 이상 공고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지분증권	리서치자료 제공 능력, 투자정보 제공 및 주문집행의 신속·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채무증권	정보제공 능력, 매매체력의 신속·정확성, 거래보안유지, 결제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플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